



다른 옵션들

무료 회의

법적 시한 내에 조정 면담을 요청하지 못했거나 조세심판원 에 이의제기를 못한 경우 재무부 에 무료 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주어질 경우 재무부에 귀하의 세액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의 요청 관련 지침은 재무부로부터 받은 납세의무 통지서에 나와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귀하가 무료 회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감사관이 내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종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 계획

재무부는 사업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 지불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 이상의 납부액에 대해 지불 계획을 요청하려면 재무부 인터넷 서비스 웹사이트 www.nyc.gov/eservices를 방문하세요.

\$500 미만의 납부액에 대해서는 재무부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지불 일정을 상의하세요. 센터 위치를 알아보려면 www.nyc.gov/visitdof를 참조하세요.

뉴욕시 납세자 보호 사무소

본 책자는 뉴욕시 납세자 보호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부와 합리적으로 노력했지만 만족스런 응답을 얻지 못한 경우, 납세자 보호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nyc.gov/taxpayeradvocate에서 DOF-911 양식, “납세자 보호 사무소의 도움 요청” 양식을 작성하세요.

이메일: DOFTaxpayerAdvocate@finance.nyc.gov

납세자 보호

사무소

재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지만 장애로 인해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www.nyc.gov/contactdofeeo)를 통해 장애 서비스 촉진자에게 연락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세요.



nyc.gov/finance

OTA Business Excise Tax [Korean]

4.2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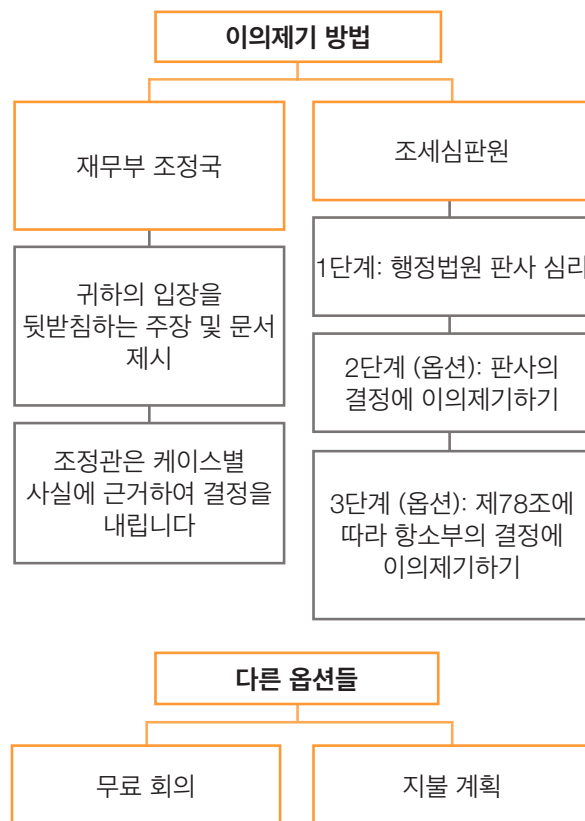
사업세 및 소비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세 납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 및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부 조정국에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조정국(Department of Finance Conciliation Bureau)

조정 회의는 공식 심리의 비용부담 없이 조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공정하고,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안입니다. 조정 회의를 요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www.nyc.gov/finance를 방문하여 “조정 회의”를 검색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세 또는 소비세 납부액에 대해서는 재무부로부터 결정통지서 또는 “불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과 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리할 경우, 그 사람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귀하는 회의를 요청할 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관은 케이스별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조정관은 재무부의 최초 결정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귀하의 납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경우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Tax Appeals Tribunal)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재무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 현장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기관입니다. 행정법원 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의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www.nyc.gov/taxappeals를 방문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행정법원 판사 심리

사업세 납부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정된 판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사는 재판을 실시하고 6개월 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할 것입니다. 모든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000 이하의 케이스는 심판원의 소액청구과에서 처리됩니다. 이 절차는 덜 공식적이며 여기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옵션): 판사의 결정에 이의제기하기

행정법원 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 30일 내에 조세심판원의 항소부에 당사자가 예외를 제기하지 않는 한 행정법원 판사의 결정은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항소부의 세 위원은 귀하의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단계 (옵션): 78조에 따라 항소부의 결정에 이의제기하기

항소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제기는 “78조”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주법의 절에서 명명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날로부터 최대 120일 내에 “78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연락처

New York City Tax Appeals Tribunal
One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07

항소부 2400호 전화: (212) 669-2070 팩스: (212) 669-2211	행정법원 판사부 2430호 전화: (212) 669-4501 팩스: (212) 669-4503
--	---